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김 선 문*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of Juvenile Crime in Perspective of Correction Welfare

Sun-Moon Kim*

요 약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보호기관이 교정·교화라는 교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Keyword : 소년범죄, 교정복지, 재범

Abstract

Juvenile crime has recently severe problems in quality as well as great increase in quantity. Especially compared to adult crime, juvenile crime has higher recidivism rate, which leads to strong doubt ab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treatment. This is because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have a bad influence on the juvenile criminal, that is not the original purpose like correction and edification, but relearning of crime.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juvenile crime needs an active level in terms of the return as sound citizens through correction beyond a simple level of maintaining order. Correction welfa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juvenile crime. This study examines the notion, types and trend of juvenile crime, considers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correction welfare, and shows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of juvenile crime in perspective of correction welfare.

▶ Keyword : Juvenile Crime, Correction Welfare, Recidivism

• 제1저자 : 김선문

• 투고일 : 2010. 09. 20, 심사일 : 2010. 09. 30, 게재확정일 : 2010. 12. 15.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42차 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제언”을 확장한 것임.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지속적인 양적증가와 함께 조직화, 집단화, 흉폭화 등 질적 심각성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죄를 지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생활고로 밤낮없이 경제활동에만 급급하다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자녀가 죄진 모습을 확인한 후 가슴을 치며 자식의 일탈행위에 통탄을 한다. 종전, 경찰은 소년법의 처리에 있어서 소년법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처벌을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전문가들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년법을 처리하는 행정상의 초기단계인 경찰은 일탈청소년의 처벌보다는 그들의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소년법들이 진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도 우선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소년범죄자의 경우 처벌을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급증하는 것이 문제다. 1980년대 20%, 90년대 25% 수준이었던 재범률은 2000년대 들어 30% 이상으로 치솟았다. 특히 전체 소년범죄자 가운데 전과 3범 이상의 비율이 15%에 달하는 등 교화에 실패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1]

소년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최근의 소년 범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범죄자의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죄자들의 범행이 거듭될수록 재산범죄에서 폭력범죄로 옮겨가고, 폭력범죄에 있어서도 보다 흉포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의 진문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범행이 거듭될수록 단독범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범죄경력발전에 따라 대담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소년보호정책과 사법적 처우관행들이 과연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주고 있다.[2] 소년범죄자가 재범의 늪에 빠지게 되면 성인범죄자로 변모하게 되고, 수사나 기소단계에서 개인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축소되어 그들이 겪는 복수수준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3]

따라서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진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정복지가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며, 우

리 사회는 소년범죄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정복지적 관점을 갖고, 이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소년범죄

2.1.1 소년범죄의 개념

소년범죄는 소년과 범죄의 복합개념으로 소년의 의미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고, 또한 범죄의 의미도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여건들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년범죄의 의미도 복합 다단하게 해석되어진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면 형법법령을 위반한 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4] 우리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범죄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제2호에 정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를 의미한다. 동조 제3호에 정한 우범(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없는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1.2 소년범죄의 유형

소년범죄의 유형은 크게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위조범죄 등의 형법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등의 특별범죄로 나누어진다.

형법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강력범죄(폭력)와 재산범죄이다. 강력범죄(폭력)는 상해, 폭행, 공갈, 협박,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말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강력범죄(폭력)의 약 70%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폭행, 상해, 공갈의 순이다. 재산범죄에는 절도, 사기, 횡령, 장물, 배임 등이 포함되는데, 매년 절도죄가 약 80%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기, 횡령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흉악)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발생비율은 강력범죄(폭력) 및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많지 않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범죄는 소년범죄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저작권법위반이 각각 특별범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 있다.

2.1.3 소년범죄의 발생 및 재범 현황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소년범죄는 1999년에 143,155명을 기록한 이후 10만 명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7,478명까지 하락했으나, 그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08년에는 134,992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자의 점유비율은 2000년 6.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5.5%로 나타났다. 한편, 소년범죄자 중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구성비율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의 경우 특별법범의 비율이 각각 29.5%, 24.9%, 26.5%,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40.9%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2008년도 소년범죄자 수는 134,992명이고 그 중 형법범이 79,766명, 특별법범이 55,226명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전체 소년범과 형법범, 특별법범 모두 증가하였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된 범죄백서 2009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중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전과 1범 이상인 재범소년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08년도 소년범죄자 114,699명 중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소년의 비율은 69.1%인 반면에 전과 1범인 소년은 13.5%, 2범인 소년은 6.6%, 3범인 소년은 3.7%, 4범 이상은 7.1%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체포된 소년범죄자의 약 31% 정도가 재범소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1970년의 4.6%, 1980년의 11.0%, 1990년의 22.4%, 1995년의 24.2%와 비교해보면 소년범죄자 중에서 재범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2008년 성인 4.6%에 반해 소년 재범률은 9.0%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5]

이러한 재범화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재범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 전과 1범이나 전과 2범의 비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과 3범과 4범 이상의 비율이 더욱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과9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수가 990명에 달하는 등[6] 소년범죄자의 보호와 미래가치를 중요시하는 것만이 더 이상 능사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고, 게다가 늘어가고 있는 소년범죄의 재범율을 살필 때,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던

그 동안의 각종 법령의 개정, 사회정책상의 변화가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수밖에 없다.[7]

2.1.4 소년범죄의 단계별 처리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죄자에게 최초 접근하는 경찰은 형사입건을 하여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고 있다. 그러나 촉범소년, 우범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한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경미한 경우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엄중훈계 후 즉시 석방하기도 한다. 소년경찰직무규칙 제2조 제 6항과 제21조에 따라 불량행위소년으로 간주하여,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의, 조언, 제지 또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 조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년풍기사범으로 처리되어 훈방조치를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에는 사후처벌이나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8]

소년법에서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란 점을 감안하여 소년범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데, 검사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각각 처벌을 달리 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는 범죄성립여부를 확정 한 후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벌금형 등의 일반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법원에서 심판절차를 행한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은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사안에 따라 심리개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다. 심리불개시의 경우 소년에 대한 훈계, 보호자에 대한 교육·관리의 고지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강제수단이 없다. 심리 결과 후 받는 보호처분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원 송치가 있다.

2.2 교정복지

2.2.1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복지란 사회복지학의 한 분야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관을 근간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기술을 활용하여, 미시적 접근방법으로는 개인·가정 및 지역사회 단위의 전문 프로그램을 이끌어 내어 활용토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교정·교화는 물론 그들의 건강한 재사회화와 그들이 속한 가정의 안정과 문제해결을 지

원하는 총체적 활동을 일컫는다. 거시적으로 보면, 교정복지 는 범죄인이라는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존엄성과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범죄문제를 해당 범죄인의 책임으로 보기보다는 해당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 왜곡된 사회구조의 시정과 범죄를 유발시킨 환경요인을 개선코자 하는 사회재통합적인 관점 하에 국가정책과 제도의 마련에 관여한다.

이러한 교정복지의 관점은 범죄인이 사회적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명제에 기꺼이 동의한다는 것을 뜻하며, 사법적 낙인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사실적 입장에 연유한 것이다.[9] 따라서 교정학과 형사정책이 궁극적으로 사회보호를 목표로 능률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교정복지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사회보호에 앞서 범죄인의 복지증진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중요시하고 있다.[10]

2.2.2 교정복지의 기능

교정복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1] 첫째,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복지의 주된 기능이다. 둘째, 범죄인의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생활에 교정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한다. 셋째, 보호관찰·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적 수준, 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가정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인 간의 유대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

2.2.3 교정복지의 실천

교정복지의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사후에 교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근래에는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사회전반의 긴장과 갈등을 줄이고 시간, 노력의 비용 등에 있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위주 사업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의 개선과 교육, 직업, 복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사업과 활동들이 요구된다.[12]

선진 각국에서는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 많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죄인들의 교정·교화·사회재적응 지원 등의 활동들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원과 같은 시설의 전문가 상당수가 사회복지사 및 교육학, 심리학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교정복지 현장이 다른 어느 사회복지 현장 못지않게 사회복지의 가치가 구현되고 사회복지 및 인간행동 관련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

III.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적 접근

소년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소년이 강력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성인범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처벌이나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늘어나는 소년범죄와 그 재범률을 보았을 때,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의 교정·보호기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보호기관이 범죄학습 공간화로 되고 있다. 소년구치소가 따로 없는 관계로 미결구급 소년범죄자들이 미결구급 성인범들과 함께 섞여있어 기관 자체가 범죄의 학습공간이 되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면서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참작해 소년의 자질을 분류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도, 대개 한달 정도의 수용기간 동안 소년범죄자들이 수용소문화를 익히기 때문에 범죄성향이 비교적 적은 소년범죄자가 범죄문화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 둘째, 보호관찰관의 상담·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대표적인 사회내처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관찰관의 활동이 월1회 정도의 상담을 통한 형식적인 감시·감독 위주에 그치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위탁처분을 위한 시설이 열악하다.

이처럼 시설내처우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하고, 수용자들에게 대한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범죄기술 및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이 교정시설 내에서 학습되는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력이 있다는 낙인은 오히려 소년범죄자의 사회복지에 지장을 초래하여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유발하고 있다.[13]

이와 같은 한계들로 인해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기에 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가 한차례의 실수나 통과의례처럼 끝

나지 않고, 오히려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못지않게, 범죄 이후 범죄의 발전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교정복지적 인식은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나 재범인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에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제도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지향하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에 대한 응보적 관점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에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교정행정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범죄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이해는 재범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관할 공공기관의 상호 분절 체계는 정보의 공유를 가로막고 있어 범죄 발생 후 대응이나 교정교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기에 다양한 차원의 정보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범예방지원의 인적 체계에 있어 사법관련 법률의 난해성과 함께 범죄인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재범예방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족은 재범예방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다. 이상 제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 중 교정적인 이념은 부족하며 오히려 더욱 처벌위주의 제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적지 않아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복지적 접근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지원을 통해 교정복지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정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교정복지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못하며, 아직 전문적 영역으로서의 그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 소년원, 교도소 등 보호시설의 공적 영역에서의 개방화가 일정 수준 진행되고 있고 또한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정수준 전문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내처우 기관인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등의 교정현장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인간행동 관련 전문가들의 투입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정 현장의 이러한 개방화와 전문화는 보다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비록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누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선진 각국과 같이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 개인적 자립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의 증진도 이루어져야 한다.[14]

IV. 소년범죄의 재범방지 방안

소년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재학습을 양산하는 기존의 형벌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교정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소년범죄자는 교정·교화 이후 사회에 복귀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며, 소년범죄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성인범죄자에 비해 클 것이고,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있어 기존의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제도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 재범방지를 위한 사전적 경찰활동

청소년기의 습관적인 비행성행위가 성인에 이르러서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발전적인 측면이 있어 초기에 예방적인 방법으로 재범차단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경찰은 소년범죄 예방 단속 활동으로 비행방지역의 설정, 풍기단속, 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지원활동과 청소년보호, 학교폭력의 단속·선도·보호프로그램 등이고, 경찰관서 관련 시민활동 참여로 청소년 육성회에서 청소년선도 보호 캠페인, 불우 청소년 지원, 청소년 장학금 지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경우 종결수사서류 일체를 검사에게 송치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있다고 해석된다. 경찰은 소년범죄에 실질적으로 사법적 처분의 지휘권이 없으므로 검찰에 이송하여 사건처리의 지침(지휘)을 받아서 하는 경찰의 직무집행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현장근무에 있어서 청소년의 불량행위를 단속 후 사안에 따라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직무집행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실질적으로 사후, 의무적인 참여 선도프로그램도 없이 귀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비행청소년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기커녕 안이하게 여기며 법의 존엄성을 인식할 수 없게 되어 다시 또 비행성 환경에 습관화된 타성적인 행동으로 재범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의 경미한 비행 발생시부터 최초 접근하는 경찰관의 개입단계에서 재범가능성, 비행환경을 심의하여 제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조치로 처벌의 개념이 아닌 선도의 목적에 치중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에 급급하기보다 개별적인 환경에 맞는 전문가의 분석판단에 따라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사

회인으로서의 육성에 방향을 맞춰야 할 것이다.[15]

4.2 교정복지종사자의 자질 향상

교정복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정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환경과 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상담이론을 현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기술과 끊임없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정복지종사자의 역할은 현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적이거나 비자발적인 만남을 지양하고 상담자나 비행청소년의 일방적인 욕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비행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제반 상황과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상담해 주어야 한다. 둘째로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특별한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남다른 인간존중의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재소자나 소년원생을 접하면서 이들의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교정사회사업가의 태도는 자신이 갖춘 기술보다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셋째로 조직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요구된다. 교정복지종사자는 조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이들은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교정현장의 비행청소년을 위해 종교인, 사업가, 법률가, 기타 민간단체 등은 물론 수많은 조직과 개인들이 상호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교정사회사업가는 조직관리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조직관리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비행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정보에 차단된 환경에 놓여있으므로 교정복지 현장에서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여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안내자로서 비행청소년들의 향후 진로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로 교정시설의 실무자와 실무자 간 실무자와 비행청소년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사회사업가는 교정시설 밖에 있는 피수용자 가족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데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3 지역중심의 종합적 다기관 연계방안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지역차원의 거시적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전략주제이다. 그러한 점에서 파출소를 거점으로 하는 경찰의 지역사회 순찰활동은 지역차원의 범행기회를 차단하는 주요 전

략의 하나가 된다. 그 동안 외국의 연구에서 경찰순찰의 범죄 차단 효과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지만, 경찰순찰은 적어도 청소년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할 때 그 지역의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주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찰의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경찰의 순찰은 규모나 빈도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방범순찰에의 참여가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활성화될 주요 요소가 된다. 또한 그 동안의 연구에서 이웃감시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듯이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경찰은 범죄예방에 관한 정보와 이웃감시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등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지역환경개선이나 지역문제 해결 등의 노력 이외에 청소년들과 가정을 위한 적합한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관리훈련과 같이 자녀의 양육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하는 훈육프로그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범죄에 있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특히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어린 시기에 중요하다고 한다면 취학전 어린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교육을 통해 알리는 강좌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센터내 혹은 동사무소 상주 복지전문가가 어린 자녀를 둔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분기별로 교육강좌를 개설하거나 혹은 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관 혹은 구청소속의 전문가가 관찰동을 순회하면서 강좌를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16]

4.4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처우제도 도입

회복적 사법의 개념은 1970년대 후반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는 북미와 유럽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범죄자-조정프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었다.[17] 1977년 Albert Eglash는 처벌에 근거한 응보적 사법과 범죄자의 치료적 처우에 근거한 분배적 사법과 원상회복에 근거한 회복적 사법이 있으며, 전통적인 처벌과 처우모델은 범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절차에 피해자의 참여를 거부하고 단지 범죄자에 의한 수동적인 참여를 요구할 뿐이나 이에 반하여 회복적 사법에 의하면 범죄는 우선 피해자, 공동체 그리고 범죄자에게 해를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인 사이의 갈등으로서 정의된다.

2000년 초반부터 미국의 형사사범은 회복적 사범모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모델'에서 시작한 회복적 사범모델은 이제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회복적 사범모델이 2001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범 총회의 공식적인 선언에 포함되면서 형사사범 분야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 선언에 따라 회복적 사범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사범제도에 '회복적 사범'모델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현재도 소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소년법의 부모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해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가족집단회의'나 피해자-가해자 중재(VOM)'으로 발전, 제도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가령 교통범죄나 경미범죄의 경우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단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도 가능할 것이다.[18]

4.5 학생범죄 대책 마련

청소년들을 좌절과 실의에 빠지게 하고 급기야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학교와 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학업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의 가치를 거부하며,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학교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해 중퇴를 하거나 급기야는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학교에 애착이 낮고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제도여건 하에서는 학생범죄를 유발시키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학생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확충하여야 한다. 처벌위주의 소년사범처리 절차는 필연적으로 범죄가 확대 재생산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엄청난 증대라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선도과정'은 이미 사법적 통제과정에 포착된 비행학생 및 학생범죄자를 대상으로 민간 또는 형사사법기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 설정을 보면, 선도할 의지는 있으나 선도를 할 기관이 거의 없으며, 소수의 민간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소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관은 거의 없다. 경찰에서도 푸른 교실 등을 운영하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자들은 그 효과를 의심할 지경이다.

학생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

회학적·교육적·행정적·법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학생범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 등 청소년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 및 가정에서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에 정보통신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완·확대하여 어릴 때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할 예절, 사이버범죄의 내용과 처벌 등에 대한 교육으로 사이버범죄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윤리 정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범죄는 반드시 처벌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미래의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경미한 범죄라도 일관되게 처벌함으로써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V. 결론

오늘날 날로 심각해져가는 소년범죄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요구된다. 소년범죄는 예방과 선도에 정점을 두고 경찰이 주축이 되어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두가 함께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년범죄는 비행의 초기 차단이 제일 중요하지만 비행 연속성으로의 발전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청소년기의 일탈은 성인범죄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소년범죄는 경찰이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다함께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문제이다.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의 목적과 기능은 용보와 억제적 차원의 구금, 격리를 통한 처벌이 아닌 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교육적 차원의 교정활동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초기에 예방적인 방법으로 재범을 차단하는 경찰

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교정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사명의식 등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 셋째, 지역차원의 거시적 다기관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처우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1/2010030100995.html.

[2] Eun-Kyung Kim · Dong-Won Lee, "Prevention and Measure about Deviation and Misbehavior of Juvenile Delinquenc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Youth Report, 2003.1. p.171.

[3] Ki-Yong Joe,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Specific Strategies of Correctional Paradigm based on the Reintegration Model", Collection of Dissertations in remembrance of Pro. Hwa-Sue Kim's Retirement,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2006, p.471.

[4] Jong-Dae Bae, 「Criminal Policy」, Hongmoonsa, 2001, p.423.

[5] Crime White Paper,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009, pp.111-399.

[6] Material submitted by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Police Agency, 2009.09.14.

[7] Eun-Mi Kim,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Juvenile Crimes and Reasonable Treatment Pla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2010, p.26.

[8] Soon-Ja Kim,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second Convi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8, p.28.

[9] Bong-Sun Hong, 「Correctional Social Work」, Hyunhaksa, 2004, p.23.

[10] Jeong-Hwan Chon, 「Correctional Social Work」, Daewangsa, 2005, p.21.

[11] Yun-Ho Lee, "Vitalization Method of Correctional Welfare in Social Welfare Centers", Korea Welfare Foundation, DongKwang, Vol.98, pp.44-45.

[12] Young-Hui Moon, "Vitalization Method of Correctional Welfare according to Increase of Juvenile Delinquency", Correctional Welfare Research, Vol.8,

p.152.

[13] Jang-Hyun Lee · Young Woo · Hwe-Kyung Joe, "A Study of Trend and Countermeasure of Youth Crim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Youth Report, 2004.12., pp.112-113.

[14] Bong-Sun Hong, "Social Meanings and Strategical Tasks for Materializing of Correctional Welfare",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2007, pp.121-122.

[15] Soon-Ja Kim,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second Convi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8, pp.74-75.

[16] Seong-Sik Lee, "Community-based Comprehensive Multi-agency Approach for Juvenile Crime Prevention", Correctional Welfare Research, Vol.- No.16, 2002, pp.142-143.

[17] Kwang-Sub Park · Yong-Se Kim · Jung-Jin Do, "A Study for Implementation of VOMD Practice in Korea: On the Legislative Perspectiv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1, p.75.

[18] Eun-Kyung Kim · Dong-Won Lee, "Prevention and Measure about Deviation and Misbehavior of Juvenile Delinquenc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Youth Report, Vol.- No.1, 2003, pp.185-186.

저자소개



김 선 문

2000.2 :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2008.8 : 조선대학교 행정학 석사.

2010.8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복지마케팅, 교정복지, 소
년범죄

E-mail : 75204000@hanmail.net